

	<h2 style="margin: 0;">학생지도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1986. 11. 1.
		최종개정일자	2014. 2. 6.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(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2.6>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2.6>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과장이 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한다.<개정 2014.2.6>

1. 학생지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연구 및 건의
2.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
3. 학생 후생, 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
5. 기타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4.2.6>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학생지도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4.2.6>
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4.2.6>

**제5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4.2.6>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